

의안 번호	1014
----------	------

##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: 2013. 8. 28.(수)
- 나. 제출자 : 박태완 의원 외 3명
- 다. 위원회회부 : 2013. 8. 29.(목)
- 라. 위원회심사 : 2013. 9. 5.(목)

### 2. 제정이유

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다른 법률과의 관계,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(안 제5조 ~ 제6조)
- 다. 지원사업, 근무환경 등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(안 제7조 ~ 제8조)
- 라. 협의회 설치, 구성·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9조 ~ 제10조)
- 마. 수당, 고용 및 신분안전 보호, 인권 등에 관한 규정(안 제11조 ~ 제13조)

### 4. 근거법규

- 가. 사회복지사업법
- 나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

### 5.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제2항에 의거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고,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
- 조례 제정의 목적은 시민 누구나 시정의 수혜자가 되어야 함에도 특정직업 또는 그 자격증을 소지하는 대상에 국한하여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것은 향후 해당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유사한 전문직 업종의 종사자(어린이 유아원교사, 유치원교사, 간호사, 요양보호사 등)에게 파급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,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치법규 양산의 빌미 제공과 집단민원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검토 후 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